

제 5 장 현정에 의견 반영

국적을 불문하고 현민 여러분의 의견을 현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히로시마현 현 행정 제언 코너

현민 여러분의 건설적인 의견, 제언을 현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현 행정 제언 코너’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언해 주신 의견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0 일 이내에 담당과(실)로부터 답변을 보내드립니다.

또한, ‘교육행정’, ‘경찰업무’에 관한 것은 홈페이지 내에 전용 접수가 있습니다. 또한, 담당과(실)에 직접 제언을 보내거나 자신의 전자메일 소프트나 우편, 팩스 등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문의처

히로시마현 총무국 브랜드·커뮤니케이션 전략팀

☎082-513-2378

HP: <https://www.pref.hiroshima.lg.jp/soshiki/19/1171540420003.html>

(2) 행정 문서의 공개 제도

현에서는 현 행정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다지는 것과 동시에 현 행정에 참여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현 행정에 관한 정보가 작성된 문서를 현민 여러분에게 공개하는 다음과 같은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제도의 개요 ◇◇

① 공개 청구 대상 문서

실시 기관의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한 문서, 도화, 사진, 전자적 기록으로 직원이 조직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실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대상입니다.

② 공개 청구를 하실 수 있는 분

어느 분이더라도 실시 기관에 행정 문서의 공개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③ 공개 시행 방법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로 시행합니다.

④ 공개 청구에서 공개까지의 절차

A	<p>공개 청구 창구</p> <p>현청 행정정보코너 (현청 남관 1 층) 또는 현의 지방기관에서 접수합니다.</p>
B	<p>공개 청구 방법</p> <p>공개 청구를 하시는 분은 공개 청구서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창구에 제출해 주십시오. 공개 청구 시 도장은 필요 없습니다.</p> <p>또한, 우편 및 ‘히로시마현 전자 신청 시스템’에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p>
C	<p>공개 등의 결정</p> <p>공개 대상 문서에 개인정보 등의 공개를 못 하는 정보가 있는 경우는 그 부분은 공개 할 수 없습니다.</p> <p>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공개, 비공개를 결정하여 공개 청구를 하신 분에게 문서(결정통지서)로 알려 드립니다. 단 부득이한 이유로 결정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p> <p>공개할 경우에는 그 일시와 장소, 비공개나 연장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알려 드립니다.</p>
D	<p>공개 실시</p> <p>공개 내용을 열람만 하는 경우는 무료이지만 사본 교부를 할 경우는 복사 비로 실비(흑백 인쇄 A3 판까지의 경우 1장당 10 엔)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사본 우편 배송은 배송료를 지불해야 합니다.</p>

이 제도의 실시 기관이나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히로시마현 웹사이트 (※) 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히로시마현 정보공개 제도에 대하여’ 로 검색

<https://www.pref.hiroshima.lg.jp/soshiki/6/1253773478458.html>

문의처

히로시마현 총무국 총무과 정보공개그룹

☎082-513-2380

(※)공안위원회 및 경찰본부장에게 하는 행정문서 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히로시마현 경찰정보공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개인정보의 공개 제도

현은 현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중 본인에 관한 정보(자기정보)에 대하여 해당 본인에게 공개하는 다음과 같은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제도의 개요 ◇◇

① 개인정보

개인정보란 우리 개개인에 관한 정보로 특정 개인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개인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가족 상황, 직업, 소득 상황 등 개인에 관한 정보로 어떤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모두 개인정보가 됩니다.

② 공개 청구 대상 개인정보

실시 기관의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수취한 문서, 도화, 사진으로 결재, 공람 등의 절차가 끝나고 실시 기관이 관리하는 것이나 자기 테이프, 자기 디스크 등으로 실시 기관의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가 기록되어 실시 기관이 관리하는 것에 기록되어 있는 개인정보가 대상이 됩니다.

③ 공개 청구를 하실 수 있는 분

실시 기관에서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가 보유된 모든 분

④ 공개 실시 방법

열람 또는 사본 교부로 실시합니다.

⑤ 공개 청구부터 공개까지의 절차

A	<p>공개 청구 창구</p> <p>현청 행정정보코너 (현청 남관 1 층) 또는 청구 대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지방기관에서 접수합니다.</p>
B	<p>공개 청구 방법</p> <p>공개를 청구하시는 분은 공개 청구서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창구에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하실 때 운전면허증이나 건강보험증 등 청구 대상의 개인정보의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또는 제시하셔야 합니다. 또한, 도장은 필요 없습니다.</p>

C	<p>공개 등의 결정</p> <p>공개 청구에 관한 개인정보에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등 공개 못하는 정보가 있는 경우는 그 부분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p> <p>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공개, 비공개를 결정하여 공개 청구를 하신 분에게 문서(결정통지서)로 알려 드립니다. 단 부득이한 이유로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p> <p>공개할 경우에는 그 일시와 장소, 비공개나 연장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알려 드립니다.</p>
D	<p>공개 실시</p> <p>공지한 일시, 장소에 결정통지서를 지참해 주십시오. 그때 운전면허증이나 건강보험증 등 청구 대상의 개인정보의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또는 제시하셔야 합니다. 또한, 도장은 필요 없습니다.</p> <p>공개 내용을 열람만 할 경우는 무료이지만 사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복사비로 실비 (흑백 인쇄 A3 판까지의 경우 1 장당 10 엔)를 부담하셔야 합니다.</p>

이 제도의 실시 기관 및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히로시마현 웹사이트 (※) 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히로시마현 자기정보 공개 청구에 대하여’ 로 검색

<https://www.pref.hiroshima.lg.jp/soshiki/6/1172054604288.html>

문의처

히로시마현 총무국 총무과 정보공개그룹

☎082-513-2380

(※)공안위원회 및 경찰본부장에게 하는 개인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히로시마현 경찰정보공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현의회 (본회의·위원회)의 방청 등

① 본회의의 방청

현의회 정례회는 대개 2월, 6월, 9월, 12월의 연 4회 열리는 외에 필요에 따라 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본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방청할 수 있습니다.(회의 내용은 인터넷으로도 중계하고 있습니다.)

② 본회의 회의록의 열람

본회의의 질문이나 답변 등의 모습을 기록한 회의록은 현청 행정정보코너, 문서관, 현립도서관, 시·구·정 사무소, 히로시마시립 중앙도서관 등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의회의 홈페이지에서 과거의 회의록(1991년 5월 임시회 이후)을 보실 수 있습니다.

③ 위원회의 방청

상임위원회는 정례회의 회기 중에 개최되는 것 외에 폐회 중에도 매달 19일쯤에 열리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도 수시로 열리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심의 상황에 대해서는 의회동 1층 회의실에서 모니터 텔레비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인터넷에서도 중계하고 있습니다.)

④ 청원·진정

현 행정 등에 대해 의견이나 요구·희망사항이 있으면 청원·진정을 현의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현의회는 제출된 청원이나 진정을 다양한 관점에서 심사하여 그 내용이 현정이나 현민에게 적당하다고 인정되면 집행기관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청원을 제출하실 때는 현의회 의원의 소개가 있어야 합니다. 진정은 현의회 의원의 소개가 없어도 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히로시마현의회 사무국 의사과

①②③은 ☎082-513-4732

④는 ☎082-513-4731

H P : <https://www.pref.hiroshima.lg.jp/site/qikai/>